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

- (제정) 2018.11.08 조례 제2655호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및 제7조(인구정책)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흥군 인구정책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,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가치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
 - 1. "인구정책"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여 고흥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이 수립·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.
 - 가.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
 - 나. 일자리·문화·교육·복지·주거·교통 등 군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
 - 다. 그 밖에 군의 인구감소 및 유출 방지와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
 - 2. "인구늘리기 시책"이란 군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시책사업을 말한다.
 - 3. "전입"이란 다른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(이하 "시·군·구")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.
 - 4. "청년"이란「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」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- **제3조(군수의 책무)** ① 고흥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종합적 인 인구정책을 수립 시행하고,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군수는 인구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군정의 제반 역량을 모아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5조(인구정책 종합계획) ① 군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인구정책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4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인구정책의 비전과 목표
 - 2. 인구정책 추진방향 및 전략
 - 3. 인구정책 사업의 시행 및 발굴
 - 4. 소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
 - 5. 그 밖의 인구정책의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 -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의 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·심의하기 위하여 민관합 동으로 고흥군 인구정책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인구정책 종합계획 방향 및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
 - 2.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
 - 3. 인구정책 관련 교육·홍보 및 지식·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- 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간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간사는 인구정책담당이 된다.
 -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.
 - 1.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, 인구정책과장, 여성청소년과장, 보건소장이 된다.
 - 2.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 - 가.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
 - 나.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다. 그 밖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 -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 -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8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
 - 1. 심산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**제9조(위원회의 운영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 상이 회의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이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11조(의견 청취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②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2조(행정·재정지원) ①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인구 유입과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
 - 2. 일자리·주거 지원 사업
 - 3. 결혼·임신·출산·보육·교육 지원 사업
 - 4. 귀향·귀촌(귀농·귀어·귀산촌) 지원 사업
 - 5. 일자리 확대와 고용 및 소득창출 지원 사업
 - 6. 다문화 가족 등 외국인 지원 사업
 - 7.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
 - 8. 전문가 및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, 토론회, 간담회 등 행사
 - 9. 군민 등에게 제공되는 인구관련 정보수집·교육·홍보에 필요한 사업
 - 10. 그 밖의 인구감소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-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·법인·단체·마을·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- 제13조(지원대상 및 내용) ①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.
 - ③ 장려금 등을 지원받고, 시·군·구 전출 후 2년 이내 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 다.
- 제14조(지원신청 및 절차) ① 제13조에 따른 인구들리 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~제5호 서식의 고흥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(이하 "신청서" 라 한다)를 작성하여 관할 주소지 읍·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읍·면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자격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사항을 결정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하고, 별지 제 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지원중단 및 환수조치)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전출, 사망 등으로 군내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일부터 지원을 중단한다.
 - ② 군수는 신청인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지원된 금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유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- 제16조(인구영향평가) 군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군 차원의 노력과 정책 조정으로 대응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17조(전문가 포럼 운영) ① 군수는 인구감소 및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군민으로 구성된 포럼, 토론회, 간담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18조(교육·홍보) 군수는 저출산·고령화 문제의 중요성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군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·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19조(포상) 군수는 인구정책의 수립·시행에 기여한 개인·기업·단체·마을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「고흥 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상금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(2018.11.8. 조2655)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전입세대부터 적용한다.
- 제2조(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군수가 수립한 종합계획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.